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과업지시서



2026. 1.

구분	소 속	성명	전화번호
입찰 및 계약	사무처 총무팀	최한규	055-250-3006
사업 담당자	전산정보원 정보전산팀	전우환	055-250-3121

I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창신대학교(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과업을 수행함을 규정한다.

1. 사업목적

창신대학교는 프로세스 기반, 모델 중심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을 도입하여 시스템 개발 전체 과정(분석, 설계, 구현, 유지보수)을 표준화하고 개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
-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라. 기술지원 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3. 사업범위

- 가.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서버·개발 라이선스 구매
- 나. 서버·개발 환경 구축
- 다. 기본 교육 및 기술 지원

4. 기대효과

- 가.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관리
- 나.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 구축
- 다. 개발 생산성 향상
- 라. 품질 안정성 및 오류 감소
- 마. 코드 표준화 및 기술 종속성 완화

1. 구매조건

-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 설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S/W 및 H/W 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대학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물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사업 담당자가 설치 물품의 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라.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물품의 구매·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的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마. 납품장비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최근 3년 이내 대학·공공기관에 해당 제품 계약 실적이 있으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설치 전 물품의 납품 일정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물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 물품이 소요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할 때 대학에 이미 설치된 시스템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的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라.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 마.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대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 없이 납품 설치 및 정책 연동이 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3. 물품의 검수

-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대학 담당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다. 검수 시 발견되는 예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 라.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대학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마. 물품을 납품 및 설치 후 담당자에게 완료 보고서(사진포함)를 제출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대학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물품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나. 사업 담당자 교육과 관련한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작 공급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 사항

- 가. 최신 성능 유지 및 업데이트 : 기술지원 기간 내 납품된 제품의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기능 향상, 보안 패치 및 마이너(Minor)급 버전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나. 장애 대응 및 복구 : 시스템 장애 발생 통보 시 1시간 이내에 원인 파악 및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완벽히 복구하여야 한다. (단, 중대 결함으로 인한 장기 소요 시 대안을 즉시 제시해야 함)
- 다. 현장 긴급 지원 : 온라인 및 원격 지원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긴급 장애나 시스템 가동 중단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전문 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실시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라. 전담 지원 체계 구축 : 원활한 상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담 기술 엔지니어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 시간 내 즉각 대응이 가능한 기술지원 창구(유선, 이메일, 원격 지원 등)를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 마. 인프라 변경 및 최적화 지원 : 운영 서버나 개발용 PC의 교체, 이전 또는 시스템 이관 발생 시,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환경 설정, 성능 최적화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6. 책임 및 보안

-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시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별첨 1, 2]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과정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제공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며, 누설 시에는 민·형사상 등 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서 임의 교체를 금지하고 교체가 필요할 시 반드시 대학에 알려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한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마. 대학은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的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 및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바. 제한 및 통제 구역 출입 시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보조기억매체(외장형 HDD, 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참여자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별첨 3,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1] 조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자. “계약상대자”가 보안정책을 위반 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학에 납부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 조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카.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7. 기타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대학이 요구할 경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학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소송 관할법원은 대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III

물품 세부 규격서

1. 제품 규격서

본 물품의 규격은 메타엠드사의 PowerMDD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은 모두 제안 가능함. ※ 동등성 여부 판단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구분	규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링 언어기술에 따른 Java코드 100%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모델 서비스 접근 권한 및 계정관리 기능 제공 - Model Test기능 기본탑재 - 변경 요건 발생 대응을 위한 검색 기능 제공 - 비즈니스 UI플랫폼 기본 탑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base Query관리 툴 기본탑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능 제공 - 모델링 진척 및 이력관리 지원 - <u>프로그램 리소스</u> 형상관리 지원 - 개발 Resource 서버 통합관리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라이선스 : 1개(영구) - 개발 라이선스 : 3개(구독/1년) - 구축 환경 									
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사양</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서버 설치 사양</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디스크 용량 : 1G 이상 - JDK Version : 1.6 이상 - Meta Database : MS-SQL - Table Space : Data용 - 4G 이상 Index용 - 2G 이상 </td><td></td></tr> <tr> <td>개발 Tool 설치 PC</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OS : Windows 7 이상 - Web Browser : IE9 이상 </td><td></td></tr> </tbody> </table>	구분	사양	비고	서버 설치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디스크 용량 : 1G 이상 - JDK Version : 1.6 이상 - Meta Database : MS-SQL - Table Space : Data용 - 4G 이상 Index용 - 2G 이상 		개발 Tool 설치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OS : Windows 7 이상 - Web Browser : IE9 이상 	
구분	사양	비고								
서버 설치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디스크 용량 : 1G 이상 - JDK Version : 1.6 이상 - Meta Database : MS-SQL - Table Space : Data용 - 4G 이상 Index용 - 2G 이상 									
개발 Tool 설치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OS : Windows 7 이상 - Web Browser : IE9 이상 									

【별첨 1】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대학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명)

【별첨 2】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대학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 속
(사업 담당자) 직위 : 성명 : (서명)

【별첨 3】

사업 완료 시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대표자) 직위 :
성명 : (서명)

서약 집행자 : 속
(사업 담당자) 직위 :
성명 : (서명)

【별첨 4】

사업 완료 시

보안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프로세스 기반 개발 플랫폼 도입 및 환경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
(업체 직원) 직위 :
성명 : (서명)

서약 집행자 : 소속 :
(사업 담당자) 직위 :
성명 : (서명)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p>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p> <p>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p> <p>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p> <p>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p> <p>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p> <p>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p> <p>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p> <p>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p>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p> <p>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p> <p>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p> <p>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p> <p>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p> <p>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p> <p>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p> <p>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p> <p>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p> <p>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p> <p>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p> <p>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p> <p>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p> <p>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p> <p>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p> <p>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p> <p>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p> <p>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p>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p> <p>가. 주요 현안·<u>보고자료</u>를 책상위 등에 방치</p> <p>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p> <p>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p> <p>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p> <p>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p> <p>3. 보호구역 관리 소홀</p> <p>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p> <p>나. <u>보호구역내</u>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p> <p>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p> <p>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p> <p>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p> <p>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p> <p>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p> <p>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p> <p>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p>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p> <p>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p> <p>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p> <p>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p> <p>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p> <p>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p> <p>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p> <p>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p> <p>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침입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창신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